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7045 지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186,758,620원(가산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53,176,7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785,840,7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435,594,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7. 4. 30.까지 B치과, 2006. 8. 1.부터 2007. 5. 31.까지 C치과의원을 각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고종류	정기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수정신고	정기신고
신고사업장수	1				0	1	1	1
사업소득금액	69,016,738				0	38,271,936	38,271,936	331,382,890
종합소득금액	69,016,738				559,598,496	808,057,445	852,484,445	1,233,410,304
과세표준	56,468,838				535,516,376	779,207,605	823,634,605	1,224,717,444
세율	26%				35%	35%	35%	35%
산출세액	10,181,897				164,130,731	249,422,661	264,972,111	441,492,628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차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치과의원의 현금 매출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과 'D'를 배우자 E 명의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F를 처남인 G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2,472,720	46,997,850	11,906,510	190,015,250[1]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교차 감사의 일환으로 2012. 11. 14.부터 2012. 12. 23.까지 H치과의원의 대표자 I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치과의원의 실질 소유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2012. 12. 13.부터 2012. 12. 23.까지 H치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342,799,000원의 현금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5,8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0,32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의 세무조사 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되던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4. 4.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09년,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1) 190,015,220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바.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 중지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2014. 4. 24. 원고에게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하였고,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이하 '이 사건 원장들'이라 한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redacte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redacted]세무서장은 2014.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8,593,552,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소득세 합계 1,861,370,220원(가산세 포함)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867,586,230	4,531,767,110	7,858,407,300	4,335,791,730	18,593,552,370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186,758,620	453,176,710	785,840,720	435,594,170	1,861,370,220

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586,2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에 2008년의 조세포탈에 관한 내용이 없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여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1.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심판일 현재 강남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7. 7. 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이에 불복하여 2019. 1. 8.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1호, 제3호, 제176조의9 제1항, 제176조의11 제1항 제1호, 제176조의12 제1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3호,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5항,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소득세분(이하 통칭하여 '소득세분'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분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한 것인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은 이미 직권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9~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권수아

판사 김지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관련 법령

■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5조(납세지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特別市·廣域市의 경우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1(납세지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特別市·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끝.